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 20 선고 2021가합762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동신, 장성순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로

담당변호사 한연규

변 론 종 결 2022. 9. 30.

판 결 선 고 2023.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등기' 란 기재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피고 B을 비롯한 12명의 사람들을 피고로 삼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B 외에 다른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의 상속관계

- 1)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5. 4. 3. 사망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비롯한 망인 소유 재산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 2)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D, 자녀 원고, E, F, G, H이 있었는데, 2012. 10. 2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 F, G, H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인 D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D와 원고 명의의 상속포기각서(이하 ‘상속포기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여기에는 D와 원고의 인감도장만 날인되었다.
- 3) 원고의 아들인 I은 D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2. 10. 24. 상속포기각서에 사서증서 인증(공증인가 법무법인 J 등부 2012년 제2994호)을 받았다.

나. E, F, G 등의 상속등기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 1) E, F, G은 2013. 7. 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5. 4. 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1995. 4. 3.자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E 등의 상속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H은 상속포기각서 작성 이후 별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을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2) E, F, G은 2015. 6.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7. 3.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등기’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선행 민사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9.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합73089호로 E, F, G을 상대로 하여, ‘1995. 4. 3.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없었고, 상속포기각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D는 의사능력이 없고 원고도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E 등은 상속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따라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약과 상속포기약정의 무효를 구하고, E, F, G이 취득한 부당이득 3억 8,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 민사소송’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20. 6. 12. ‘상속포기각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D도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E, F, G이 원고에게 상속재산 중 일부(이 사건 각 부동산과는 별개의 부동산이다)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여 원고가 위 상속재산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한 점’ 등의 이유로, 상속포기각서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원고는 제1심 판결에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22559호). 항소심 법원은 2021. 12. 23. ‘원고는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상속회복으로서 말소등기 또는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위 말소등기 또는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 손해배상 부분 소가 부적법한 이상, 상속포기각서가 무효인지 여부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항소심 판결은 2022. 1. 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는 심한 치매 증상으로 의사능력이 없어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었고, 실제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도 않았으며, 의사능력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채 2013. 9. 11. 사망하였다.

이처럼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적법한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있었던 것처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마쳐진 E 등의 상속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속인의 소유로 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 F, G가 참칭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민법 제999조 소정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다.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망인에 대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E, F, G의 지위는 확정되어 상속이 개시된 망인의 사망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상속개시일로부터 E, F, G의 소유로 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대로 D가 의사무능력 상태였는지,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기홍, 판사 이정훈, 판사 서동원

별지

목 록

순번	부 동 산	등 기
1	고양시 일산동구 K 대 56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5. 7. 3. 접수 제120898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
2	고양시 일산동구 L 대 517㎡	위 등기소 2015. 7. 3. 접수 제120898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
3	고양시 일산동구 M 전 83㎡	위 등기소 2015. 7. 3. 접수 제120898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
4	고양시 일산동구 N 대 579.3㎡	위 등기소 2015. 7. 3. 접수 제1208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5	고양시 일산동구 O 답 126.2㎡	위 등기소 2015. 7. 3. 접수 제120898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
6	고양시 일산동구 P 대 516.4㎡	위 등기소 2015. 7. 3. 접수 제1208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7	고양시 일산동구 Q 답 12.8㎡	위 등기소 2015. 7. 3. 접수 제120898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
8	고양시 일산동구 R 대 509.6㎡	위 등기소 2015. 7. 3. 접수 제1208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